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변 호	2467
------------	------

2021. 06. 22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21. 5. 28. 문병훈 의원 발의 (2021. 6. 1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등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. 현재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,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명문화하여 시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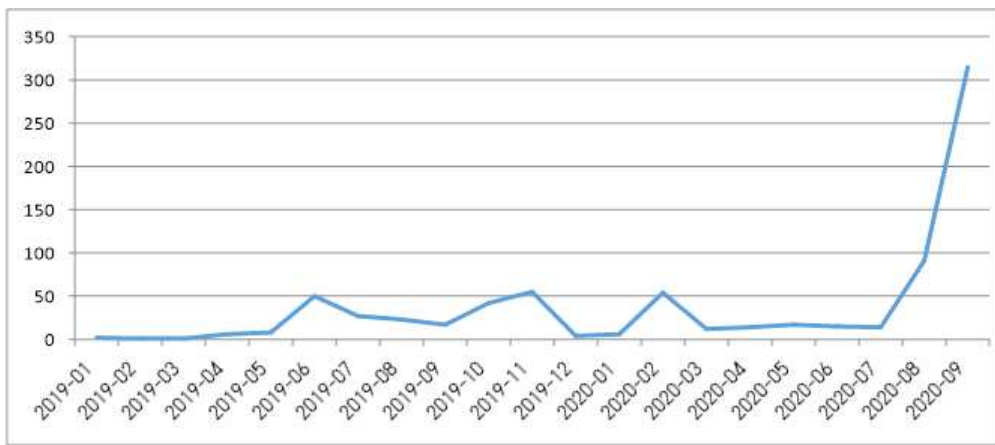
-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하고 필요 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20조제7항).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에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하고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문병훈 의원이 발의

하여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-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에서 고밀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임.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의 허용 폭이 다른 사업에 비해 큰 만큼¹⁾ 주민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('19년 236건 → '20년(9월말) 538건), 집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

〈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월별 민원 건수 (단위:건)〉

- 따라서 주민의견을 전달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지역 영향에 대하여 주민대표인 지역구 시의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.
- 일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지만 통합심의를 거치는 사업²⁾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데, 지역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 등은 통합심의 시에라도 시의원의 의견개진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의견청취 절차의 보완개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.

1) 사업부지 면적 1,000㎡ 이상이고, 기존 상업지역과 연접하거나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일반(또는 근린)상업지역까지 변경이 가능함.

2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’

- **현행 규정 상 통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³⁾, 심의위원인 시의원 외에도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, ‘지역구 시의원’을 명시함으로써 참여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**
- **다만 조례 제20조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이 사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3조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.**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~⑥ (생략) 〈신설〉	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고,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④ ~ ⑦ (생략)	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④ ~ ⑦ (생략)	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④ ~ ⑦ (생략)

담당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
연락처	02-2180-8208
이메일	urbanth@seoul.go.kr

3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3조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【붙임】 관련 규정

○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0. 4.>

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의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4., 2020. 3. 26.>

1. 국토교통부,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또는 행정기관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
2. 도시계획·건축·교통·환경·재해·에너지·경관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(다만,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)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·설계전문가·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
4. 「건축법」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
5. 삭제 <2020. 3. 26>
6. 「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
7. 삭제 <2020. 3. 26>
8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
9. 「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

람 2명 이상

10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

11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

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. <개정 2019. 3. 28.>

⑥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.

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0. 4., 2019. 3. 28.>

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28.>

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사업대상지가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일 경우 출석 위원에 해당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4.>

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의록 공개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